

부산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2가단33022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1. 11.

판 결 선 고 2023. 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8. 6. 12.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18. 7. 3. 접수 제332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주식회사 D에 대하여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위 채무는 E 주식회사를 거쳐서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618148호)를 제기하여 2018. 11. 20. “피고는 원고에게 5,357,964원 및 그 중 2,403,217원에 대하여 2008.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형제지간인 C, 피고, F의 어머니 G(1933년생)가 2007. 12. 5. 사망하여 위 3인이 G의 상속인이 되었다.

다. C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8. 6. 21. G부터 공동상속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 중 법정상속분인 1/3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C의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C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이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관련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전에 이미 C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 원리금 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법정상속분 1/3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를 상속하게 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C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부동산 중 대지는 피고의 자금으로 매수한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을 짓기 위하여 받은 대출금 이자는 피고가 변제하였으며, 특히 망인의 사망 이후 피고가 위 대출금을 일시에 변제하였다. 또한 망인은 피고가 동거하면서 부양하였고 C은 망인을 부양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유지에 기여한 정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C이 자신의 법정 상속분을 포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것이 C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2001. 1. 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다세대주택 전체에 관한 공사대금 177,500,000원이었다. 다세대주택 6세대에 대하여 전부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다세대주택 건축을 위한 자금은 상당부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된 대출금으로 조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G는 2001. 5. 15.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G,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 채권최고액 26,000,000원으로 된 2001. 5. 15.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있었다. 위 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은 대출금액 20,000,000원, 대출기간 2000. 12. 29. 2020. 12. 29.까지로 하는 주거환경주택자금대출(계좌번호 1 생략)이다. 피고는 2001. 12. 28.부터 2014. 12. 29.까지 장기간 매월 피고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위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여 왔다.

○ 그러던 중 H은행은 G가 사망한 이후인 2016. 1. 8. G에게 대출금 변제가 지체되고 있음을 이유로 경매실행예정통지를 보냈다. 피고 명의의 H은행 통장(계좌번호 3 생략)에서 2016. 1. 22. 14,111,050원이 대체출금되었고, 그 직전에 피고가 운영하던 I회사 명의로 15,000,000원이 입금된바 있다. 그 즈음 피담보채권 14,111,050원이 변제되었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6. 1. 25.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는 위 대출금 잔금을 전부 변제하였다.

○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다세대주택은 3층 6세대로 되어 있는바 아래에서 보는 다세대 주택의 등기 관계를 살펴보면 건축자금의 출처와 무관하게 건축에 필요한 대출금 조달관계상(1인 1대출만이 가능하여) 가족들로 명의를 나누어 등기한 것이라는 피고 주장과 대체로 부합한다.

J호 2001. 5. 15. 소유권보존 F 2001. 10. 19. 소유권이전 피고	K호 2001. 5. 15. 소유권보존 L(F의 처) 2001. 10. 19. 소유권이전 M 2001. 10. 24. 소유권이전 피고
N호 2001. 5. 15. 소유권보존 피고 2001. 10. 19. 소유권이전 F	O호 2001. 5. 15. 소유권보존 M 2001. 10. 19. 소유권이전 L
P호(이 사건 부동산) 2001. 5. 15. 소유권보존 G 2018. 7. 3. 소유권이전 피고	Q호 2001. 5. 15. 소유권보존 C 2003. 10. 24. 소유권이전 F 2018. 7. 9. 강제경매이전 R(피고의 자녀)

5.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민

별지